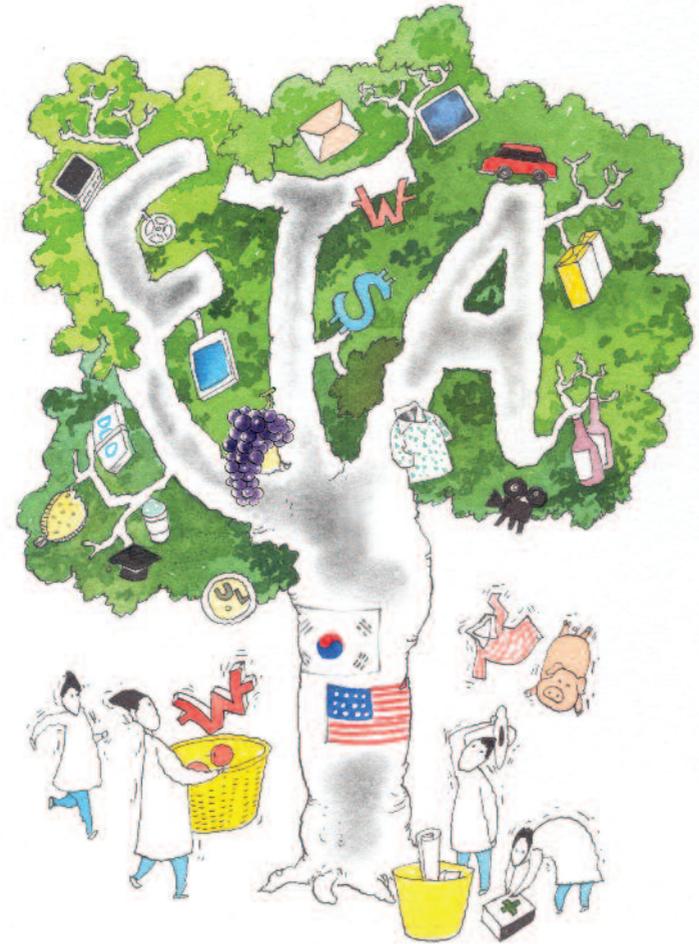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관계부처합동

* * *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국가와 유럽, 북미를 망라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제 세계 최대 선진경제권인 미국과의 FTA가 3월 15일 발효됩니다.

한·미 FTA는 무역의존도가 8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에게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기업인들은 한·미 FTA를 통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청년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생활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소기업인·농어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변화 및 기업환경의 변화, 보완대책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비자 편에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소비자 가격하락, 제도개선, 문화생활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변화를 수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편에서는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달라지는 관세 및 통관절차와 FTA 활용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2년 1월에는 기존 FTA 보완대책('07.11)에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하였고,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 이 책의 3편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혀 우리의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와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 *

한·미 FTA 시대의 소비생활,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비자 혜택은 올리고!
제품 값은 내리고!
선택 폭은 넓히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문화·교육·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의 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FTA 발효와 더불어 증명표장제,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도입·시행되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한·미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소비생활

—
FTA로 미국을 쇼핑한다

치즈, 감자, 포도 등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체리·자몽·오렌지 등 미국산 과일 가격이 내려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과일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의 과일을 우리 식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과일을 수입하고 있지만, 수입하고 있는 품목 중 대표적인 상품은 체리·자몽·오렌지 등입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체리는 미국 북서부에서만 전 세계 체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체리 수입량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리에는 2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는 관세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로 체리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관세 인하분 24%에 해당하는 가격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자몽(30%), 오렌지(50%), 키위(45%) 등의 과일에도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자몽은 5년, 키위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오렌지는 무관세물량을 확보하여 우리가 즐겨 소비하는 과일의 가격이 크게 인하될 것입니다.

미국산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가 철폐됩니다.

치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한 치즈는 연간 6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입한 치즈는 연간 2천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합니다. 뉴질랜드로부터 연간 5천만불 수준의 치즈를, 미국으로부터는 연간 4천만불의 치즈를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치즈 수입량을 합하면 우리나라 치즈수입량의 절반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즈를 즐겨 소비하지만, 치즈에는 36%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선한 치즈·커드, 블루바인 치즈, 체다치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치즈를 비롯한 버터, 밀크와 크림 등 비교적 관세가 높았던 낙농제품을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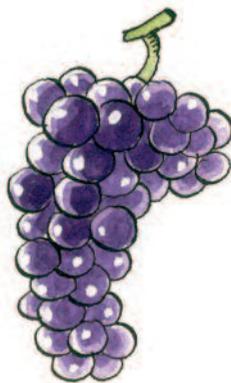
영국의 체다지방에서 유래한 체다치즈는 현재 미국에서 대량 생산되어 연간 35억원의 체다치즈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체다치즈에 부과되는 36% 관세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체다치즈를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다 이외의 일반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도 15년에 걸쳐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치즈이외의 낙농품에 대한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버터의 경우 현행 관세 89%가 10년 후에 철폐되며, 밀크와 크림은 36%의 관세가 10~15년 후에 모두 철폐됩니다. 그리고 수입 낙농품의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산 낙농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 제품의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치즈 등의 낙농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포도·건포도에 부과되는 관세도 철폐됩니다.

미국산 포도는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포도에 밀려 국내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절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칠레산 포도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포도에 부과되는 45%의 관세를 대신하여 계절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 우리 포도의 출하기인 5~10월에는 포도관세 45%가 17년에 걸쳐 균등철폐되고, 10~4월에는 포도관세가 발효즉시 24%로 인하되어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포도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포도철이 아닌 계절에도 소비자들은 더욱 싼 가격으로 포도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미국산 건포도는 현재 21%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포도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3500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건포도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건포도의 경우 21%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한·미 FTA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미국산 건포도를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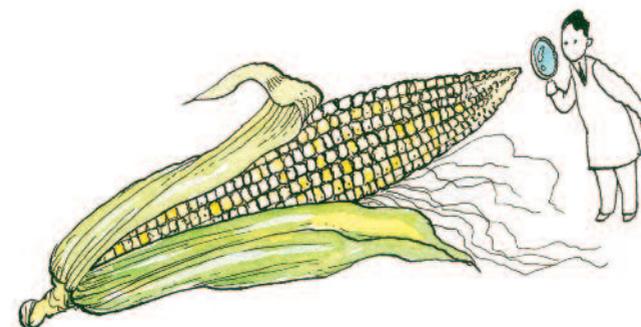
감자·옥수수·대두 등 주요 농산품의 관세부담도 줄어듭니다.

감자·옥수수·밀 등의 곡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용감자의 관세는 30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간 5백만불 정도의 식용감자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감자 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연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약 3천톤)을 확보하여 감자를 수입할 때의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평가됩니다.

칩용감자도 304%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칩용감자의 경우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12월~4월 기간에 수입하는 물량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칩용감자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소비자들도 이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미 FTA 발효로 옥수수·대두 등의 가격인하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7년간 328%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식용대두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487%의 고관세가 유지되지만, 연간 1만톤의 무관세 물량(1년차)을 확보하여 관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술안주로 애용하는 호두·해바라기씨·아몬드 등 미국산 기호식품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견과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몬드, 술안주로 즐기는 해바라기씨, 정월대보름에 부럼으로 먹는 호두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는 품목입니다.

이 중 아몬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생산품입니다. 전 세계 아몬드의 80%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몬드는 건강식품이나 술안주 등의 기호식품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드에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몬드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아몬드를 구입할 때에 다소의 관세부담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아몬드의 가격부담이 경감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아몬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두나 해바라기씨에 부과되는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호두에 부과되는 30%의 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며, 해바라기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도 2년에 걸쳐 철폐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후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등 견과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산 닭고기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아이들의 간식과 영양식, 그리고 고단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닭고기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닭고기 7마리 중 1마리가 수입산일 정도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점유율은 높은 편입니다. 수입되는 닭고기의 대부분은 통닭이나 삼계탕용이 아닌, 냉동 부분육의 형태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닭이 아니라 다리, 날개, 가슴살의 형태로 수입하는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은 닭다리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닭다리 부위는 미국으로부터, 닭가슴살 부위는 브라질로부터 수입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입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18~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닭다리, 날개, 가슴살에 부과되는 관세 18~20%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국내의 닭고기 가격도 내려가 소비자들의 식탁 물가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미국산 생삼겹살 관세 22.5%가 철폐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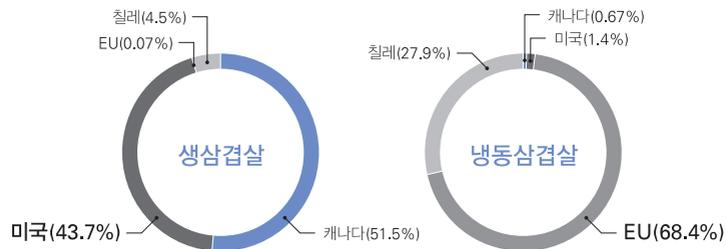
가족·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야유회에서, 우리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위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위로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찾는 음식은 바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삼겹살을 즐겨 소비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1인당 삼겹살 소비량은 연 평균 9kg에 달하고, 삼겹살 수입량도 연간 9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크게 생삼겹살과 냉동삼겹살로 구분됩니다. 생삼겹살은 냉동삼겹살에 비해 수입액은 작지만, 대부분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생삼겹살은 수입 생삼겹살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생삼겹살의 절반이 미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생삼겹살은 22.5%의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산 생삼겹살의 수입가격은 저렴하더라도 높은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입가격에 관세가 포함된 삼겹살을 구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생삼겹살에 부과되던 관세가 10년에 걸쳐 매년 약 2.2%씩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입니다. 만약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생삼겹살을 우리 식탁에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 삼겹살의 시장점유율



미국산 건강보조식품의 가격이 내려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룬은 1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후에는 관세가 철폐됩니다. 또한 미국산 천연꿀에도 24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200톤에 해당하는 무관세 물량을 확보하여 관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미국산 제품

품목	관세율	철폐 시기	
식품	냉장삼겹살, 냉장목살	22.5%	10년철폐
	토마토 주스	30%	5년철폐
	포도즙	30%	즉시철폐
	밀가루	4.2%	5년철폐
과일	오렌지	50%	계절관세
	레몬	30%	2년철폐
	체리	24%	즉시철폐
기호식품	와인	15%	즉시철폐
	맥주	30%	7년철폐
	아몬드	8%	즉시철폐
	인스턴트 커피	8%	5년철폐
의류 및 화장품	남성 T셔츠	13%	즉시철폐
	향수	8%	3년철폐
기타	비타민	8%	3년철폐

※ 가격인하효과는 관세철폐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유통마진 등의 변화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미국산 화장품, 의류, 유기농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의 질이 높아집니다.

미국산 화장품 관세 8%가 철폐됩니다.

국내 여성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수입화장품은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E사, B사, C사 등 미국산 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10년 기준), 프랑스산 화장품보다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제품 중 하나로 연간 수입액은 무려 2억불 이상에 달합니다.



한·미 FTA로 그간 미국산 수입화장품에 부과되었던 관세 8%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30개 이상이 미국 기업임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향후 미국 화장품 기업의 국내진출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미국산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화장품의 관세인하가 화장품 가격인하로 직결될 지는 국내 판매자의 마케팅이나 가격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 관세 인하폭이 가격인하보다는 프로모션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진출업체가 늘어나 소비자의 화장품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산 셔츠, 청바지 등 의류 관세 13%도 즉시 철폐됩니다.

섬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지만, 섬유 제품 중 넥타이·수트·재킷·숄·손수건 등 의류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류의 대미 수입액은 연간 8천만불 가량이며, 대미 수출액은 4천만불 가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에는 8~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수입관세의 인하는 미국산 의류의 가격을 인하시킬 것입니다.

특히 A사, H사 등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산 브랜드 의류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미국산 의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최근 세계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을 통해 개도국에서 생산하는 사례가 늘면서,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류의 품질을 나타내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FTA로 의류 관세 13%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기농 식품을 보다 저렴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기농 잼, 설탕, 마요네즈 등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래 웰빙, 로하스 등의 새로운 문화코드도 가세하면서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수요량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 유기농 식품의 수입액은 4천만 불로 매년 수입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이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기농 식품인 커피(2~8%), 오렌지주스(50%), 포도주스(45%)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밀가루(4.2%)는 5년간 균등 철폐되며, 잼(30%), 마요네즈(8%)는 10년간 균등 철폐되는 등 각종 미국산 유기농 식품들이 보다 저렴하게 우리나라로 수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승용차 중 미국산 승용차는 연간 1만3천대 수준으로 전체 수입 자동차 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수입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8%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4년간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가 4%로 인하되고 발효 5년차 이후부터는 무관세로 미국산 승용차를 수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인하는 관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연쇄적으로 경감시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관세인하분 이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미 FTA의 미국산 수입자동차 가격인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cc 이하인 미국산 수입차량은 한·미 FTA 발효 즉시 약 4%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발효 5년차 이후부터는 관세 철폐에 따라 약 8%에 해당하는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대형차를 포함한 2000cc 초과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관세인하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경감까지 누릴 수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미국산 대형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한·미 FTA 발효 후 약 12%에 해당하는 가격 인하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미국산 와인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와인 애용가가 늘면서 와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와인은 국내 와인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 측면에서도 프랑스 와인을 능가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와인은 15% 관세가 부과되는 고관세 품목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최대 15%까지 가격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인하 폭은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유통 정책과 마케팅 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한·미 FTA로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미국산 와인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입 와인에 부과되는 관세와 주세

일반적으로 와인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 중 하나로 기본세율은 30%이지만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협력관세 15%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실질 관세율은 15%입니다. 그런데 관세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주세'라는 세금으로, 와인의 주세율은 30%입니다. 또한 주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주세액의 일정률 10~30%(와인은 10%)가 교육세로 다시 부과되고, 이들 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0%가 최종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와인의 우리나라 도착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68,245원이 됩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되면 특정국가로부터 와인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46,300원입니다.

즉 FTA 체결로 21,945원의 세액이 절감되고 이것이 원가에 반영된다면 수입 와인 구매 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	100,000원×15% = 15,000원	100,000원×0% = 0원
주세 = (주세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율	115,000×30% = 34,500원	100,000원×30% = 30,000원
교육세 = 주세액×교육세율	34,500×10% = 3,450원	30,000×10% = 3,000원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율	(115,000+34,500+3,450)×10% = 15,295	(100,000+30,000+3,000)×10% = 13,300
조세 총액	68,245원	46,300원

실제로도 지난 7월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와인의 관세(15%)가 철폐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이태리 산 와인의 가격이 관세철폐분에 상응하는 13~15% 수준으로 인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칠레산 와인의 가격도 종전보다 약 5%정도 인하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 인터넷 쇼핑사이트나 구매대행업체 등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의류, 가방 등을 직접 해외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오프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동일하게 관세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고 있는 주요 상품들의 관세 철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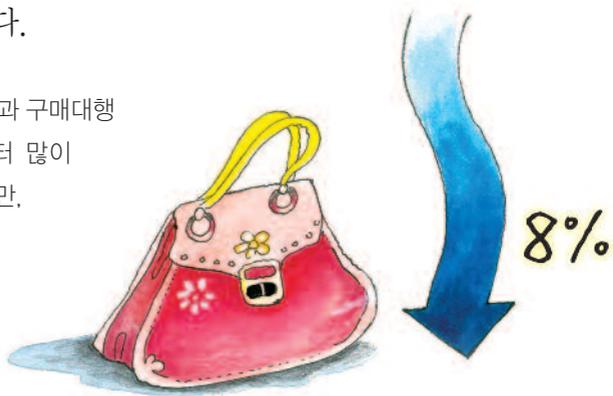
의류 관세는 즉시 철폐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미국산 L사, G사, P사 등 미국산 청바지, 셔츠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을 통해 미국산 의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산 의류도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미국산 의류를 구입하면서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만 의류에 부과되던 13%의 관세 등 세금 부담으로 소액 면세범위(15만원이내)에서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류에 부과되는 관세 13%가 즉시 철폐되어 미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관세 부담이 사라져 온라인 해외 쇼핑의 가격부담이 경감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미국산 의류를 구입할 때 관세부담 없는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백·여행가방·학생가방 등 가방류도 관세가 즉시 철폐 됩니다.

핸드백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과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많이 구입하는 품목 중 하나이지만, 핸드백 등의 가방류에는 약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되어 핸드백에 부과되는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온라인을 통해 직접 미국에서 핸드백을 구입할 경우 관세부담 없이 미국산 핸드백을 8%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를 통해 핸드백 뿐만 아니라 여행가방, 학생가방 등 가방류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통해 미국산 가방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들의 관세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할아버지는 유기농법
아버지는 차 부품 수출로 '재미'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변해 수해를 입은 농민들,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수출산업 종사자들과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들,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주부들까지. 앞으로 추석에는 현민씨 가족 이야기처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보자. 한·미 FTA가 발효됐다는 것을 전제로 2012년 한 가족의 추석 풍경을 가상 시나리오로 꾸렸다.

2012년 추석, 현민씨 일가친척이 모처럼 시골 할아버님댁에 다 모였다. 이번 명절에는 미국으로 이민 간 작은아버지 가족까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 집안이 왁자지껄하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고...” 작은아버지 손을 꼭 쥐고 차마 놓지 못하는 할머니, 뭐가 어색하고 부끄러운지 연방 몸을 비비 꼬고 있는 여섯 살 손녀를 보며 할아버지의 입가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든을 바라보는 현민씨 조부모님은 시골에서 쌀농사를 짓는다. 밭일보다는 논일이 편하다며 평생을 쌀농사에 바친 할아버지. 10년 전부터는 친환경 농사를 시작했다. 막내 삼촌이 할아버지 곁에서 본격적으로 농사 일을 도우면서 삼촌의 조언으로 친환경 농사로 전환했다.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청동오리를 풀어 시작했던 농사는 한때 전국을 휩쓴 조류독감 여파로 실패했다. 결국 막대한 손실을 본 채 우렁이 농법으로 바꿨다. FTA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 친환경 농법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삼촌의 말에 시작한 일이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벼의 첫 수확 날, 생산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할아버지는 내내 우울해했다. 이전에 비해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환경 쌀이라 이전에 비해 훨씬 높은 값을 받아 할아버지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번졌다.

저농약, 무농약을 거쳐 완전 유기농 쌀을 재배하게 된 지금은 오히려 살림살이가 넉넉해졌다. 최근에는 삼촌이 인터넷으로 친환경 쌀 직거래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매출이 더 늘었고, 미국에 있는 한인단체나 식당에서도 구입 문의가 들어온다.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로 관련 산업 호황

현민씨 아버지는 장남이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농사일을 거들면서 함께 사는 막내 동생인 삼촌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라면서 장남이라는 이유로, 공부도 잘한다는 이유로 늘 대접받고 지냈다. 부모님의 헌신적 뒷바라지 끝에 대학에 들어갔지만 입학 이후 줄곧 서울에서 생활하느라 농사일 한번 거든 적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바쁜 회사일로 시골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은 1년에 단 두 번, 명절 때가 전부다. 자동차부품 회사를 경영하는 현민씨 아버지는 한·미 FTA 이후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완성차 수출도 그렇지만 한·미 FTA 발효 후 2.5~12.5%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돼 미국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사는 작은아버지는 최근 차를 새로 구입했다.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한국 차에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제네시스로 바꿨지. 타보고 깜짝 놀랐어. 렉서스나 BMW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던걸. 한·미 FTA가 체결됐다고는 하지만 관세 철폐 유예로 당장

혜택이 크지 않은 것 같아 망설였는데 직접 타보고 성능을 확인하니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더라고.” 작은아버지는 은근슬쩍 자신의 차를 자랑한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삼형제는 할아버지네 유기농 쌀로 담근 막걸리를 마시며 밀린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었다.

행복해진 장바구니와 취직한 현민씨

현민씨 어머니는 작은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큰며느리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어머니는 명절에 시골에 내려갈 때면 서울에서 미리 차례상 차릴 장을 다 본다. 현민씨는 명절 때나 김장철이 되면 늘 집꾼을 자청하며 어머니를 따라 나서서인지 또래 이십대 후반 남자치고 드물게 장바구니 물가에 흰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는 폭우, 겨울에는 냉해, 그것도 아니면 구제역 파동 등으로 먹을거리 비상이 걸리며 물가가 폭등해 장보기가 겁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FTA로 수입 농·축산물이 들어와 그런지 최근에는 전에 비해 장바구니 비용이 제법 줄어들었다.



전을 부치는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 곁에서 할머니는 준비해 온 장거리를 들여다보며 한마디 하신다. “야~, 이 비싼 삼겹살을 이리 많이.” 이번 추석에는 미국서 작은아버지 가족이 온 까닭에 삼겹살을 넉넉하게 준비했다. 작은아버지가 삼겹살을 무척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만 해도 비싼 삼겹살 가격에 엄두도 못 냈지만, 프랑스와 벨기에 삼겹살이 수입되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그래? 그럼 우리끼리 먼저 물 건너온 돼지 살짝 구워 맛이나 볼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들을세라 작은 목소리로 농담을 건네고, 부엌은 웃음바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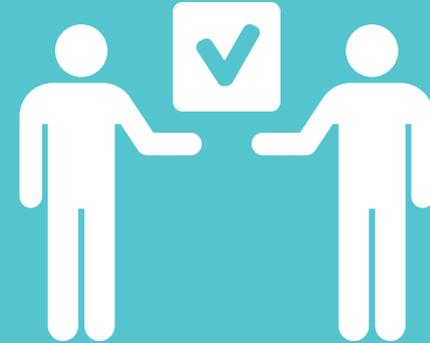
심심해하던 사촌동생과 간단히 영어로 대화도 나누며 함께 TV를 보다 현민씨는 슬쩍 아버지 곁으로 자리를 옮겨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켰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이 환상이다. 본격적으로 맛을 보고 싶는데 모두들 이야기하느라 바빠 현민씨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다. 그때 삼촌이 “현민아, 취직했다며?”라며 아는 체한다.

현민씨는 군대를 마친 후 복학해 대학 졸업반이다. 무역을 전공했는데 최근 방학 때 인턴으로 일하던 섬유수출 업체에 취직했다. 고등학교 때 입시에 도움이 될까 꾸준히 읽은 신문에서 우연히 FTA 관련 기사를 보고 일찌감치 전 세계를 시장으로 물건을 팔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는 현민씨. 이후 무역업을 할 생각으로 영어와 중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스펙을 쌓았다. 운도 따랐다. 한·미 FTA로 의류 수출 관련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돼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 섬유업체가 중흥의 계기를 맞게 된 것.

청년실업이 심각한 때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며 축하해 주는 가족 속에서 현민씨는 불과 몇 년 사이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을 한다. 현민씨는 이러한 행복이 모두 FTA를 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애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출처 : FTA세상 '11년 9월호 〉

한·미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서비스

서울에서도 뉴욕의 서비스 시장을 만난다



한·미 FTA를 통해 서울에서도 뉴욕의 금융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금융서비스도 엄격한 조건하에서 개방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외국의 금융상품을 제공받았지만 앞으로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서비스의 선택폭이 확대되어 소비자 편의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실물 자산과 연계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한국의 200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체결로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소비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금융상품 접근이 전체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하여 국내 금융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살렸습니다. 즉,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국내법상 허용되는 신금융서비스여야 하며,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 법인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러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됩니다.

우체국 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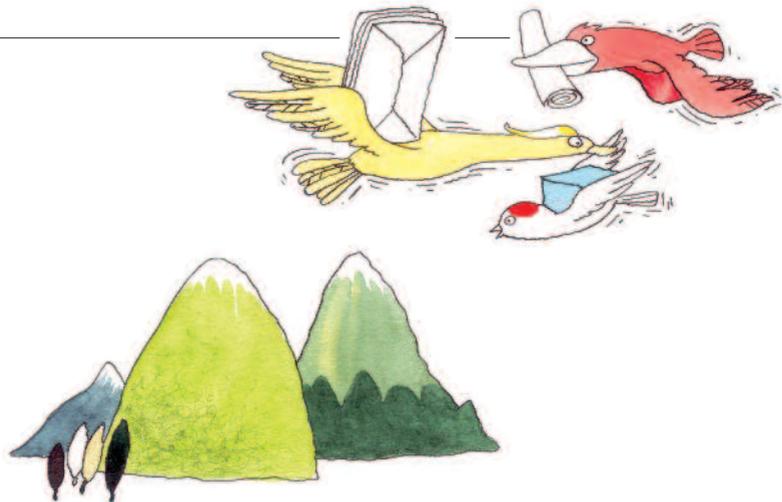
그러나 한·미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하여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금융건전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미국은 우체국보험이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보험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였으며, 한편으로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협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우체국보험이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은 허용하여 우체국 보험을 통한 보편적 보험서비스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 영역 진입은 제한하여 민영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 여건을 제고하였습니다.



우편서비스 제공에 민간사업자의 진출이 확대되어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한·미 FTA로 우편서비스 시장에도 민간사업자들의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나 국민들의 우편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우편법 개정을 통해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서신'에서 제외하고, 중량 350g 초과 또는 우편기본요금(현재 270원) 10배 초과 서신은 국가독점에서 제외하여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은 다양한 우편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편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집니다. 우편시장 개방에 따라 새로이 진입하는 사업자에게 신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서신송달업자 지도·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미 FTA가 우편서비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로펌, 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어
국내 소비자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 이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합니다.

우선 한·미 FTA 발효 즉시(1단계) 미국 로펌, 미국 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으로 국내진출이 가능해져 기업 등 국내소비가 국내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로펌들의 국내진출은 국내 법률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로펌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법률 서비스 시장을 선진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변호사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어, 국내 기업 중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미 FTA 발효로 미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미국 외국법자문사들이 국내에서 무제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자문사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및 그 국가가 당사자인 조약 등(예를 들어, 미국 법자문사는 미국법 및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 등)에 관한 자문업무에만 국한됩니다.

나아가, FTA 발효 2년 후(2단계)에는 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사안별 업무제휴가 가능해져 외국법과 국내법이 혼재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발효 5년 후(3단계 개방)에는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 설립을 통한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지게 되어 기업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세무·회계 분야도 개방되어 미국회계 자문서비스가 허용됩니다.

세무·회계 분야도 한·미 FTA 발효로 법률 서비스 분야와 유사하게 개방됩니다. 단, 법률 서비스 시장이 3단계에 걸쳐 개방되지만, 회계·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에 걸쳐 개방됩니다.

우선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1단계) 미국의 세무·회계 자문 서비스가 국내에서 허용됩니다. 즉, 발효 이후 즉시 미국의 세무·회계사 또는 세무·회계법인인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하여” 미국 또는 국제 세법 및 회계·세제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반드시 미국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서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가 허용되어,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2단계 개방) 물론 국내 법인에 대한 미국측의 출자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투자 자본은 전체의 50%미만으로만 허용되며, 미국 세무사 1인은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미만까지만 보유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조건 내의 개방이지만 한·미 FTA를 통한 회계·세무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한국의 세무·회계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받고, 회계·세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제도개선

FTA 발효로 달라지는 우리 법규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활용 하면 안심하고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직할 때, 혹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경력과 특이사항을 이력서라는 서류에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쇠고기도 우리처럼 이력서가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쇠고기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서인 “쇠고기 이력시스템”이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해 쇠고기의 등급과 도축일시 등을 알 수 있게되는 셈입니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쇠고기 이력시스템(<http://www.mtrace.go.kr>)에 접속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인터넷 또는 핸드폰(스마트폰)을 통해 입력하면, 구매하는 쇠고기가 한우인지, 등급은 무엇인지, 도축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쇠고기 관련 이력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는 농식품부가 개발한 “안심장보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별도의 개체식별번호 입력 없이 자동으로 구매하는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12월부터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영업자에게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문제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정확한 수입유통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유통기한, 냉장·냉동여부 등)를 확인(<http://www.meatwatch.go.kr>)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도 시행은 쇠고기의 위생·안전 및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도가 시행되어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스마트하게 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식품의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합니다.

횡감 또는 조리된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
고기, 쌀, 배추김치 6개 품목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계기로 소비와 수입량이 증가
하고 있는 수산물(6품목)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품목(6품목, '12.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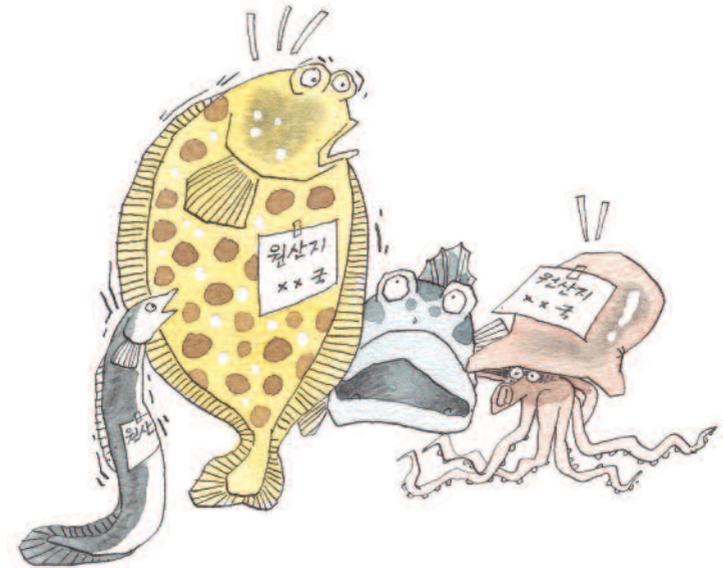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이제 김치뿐만 아니라 김치찌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여 적용
합니다. 그동안 원산지 둔갑사례가 많은 배추김치의 경우 음식점에서 찌개용과 탕용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원산지 관리 및 단속이 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 벌칙 강화('12.1월 26일 시행 예정)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과 아울러 2회 이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3단계 구조(10%, 5%, 면제)에서 2단계 구조(5%, 면제)로 단순화됩니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자동차와 관련된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의 조세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3단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배기량이 1,000cc 이하라면 개별소비세 부담이 없으나, 배기량이 1,001cc부터 2,000cc 이하의 차량은 5%, 2000cc 초과 차량은 10%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차량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제도가 기존의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단순화되고, 세율도 낮아져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즉,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FTA가 발효되는 해에 8%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고, 다음 해에 7%, 그 다음 해에 6%, 그 다음 해에 5%가 적용되어 발효 3년 후 부터는 1,000cc를 초과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5%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000cc 이하	1000cc 초과 2000cc 이하	2000cc 초과
기존	면제	5%	10%
변경	면제	5%(발효 3년 후 부터)	

한·미 FTA 발효로 우리가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5단계 구조로 부과되고 있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3단계 구조로 단순화되고, 세율도 낮아져 자동차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기존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경차(cc당 80원), 소형차(100원, 140원), 중형차(200원), 대형차(220원) 등 5단계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배기량에 따라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1600cc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의 세율이 부과되는 3단계 구조로 단순화되어 소형차 일부와 대형차는 cc당 20원의 세액이 경감됩니다.

차종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800cc 이하	801~1000cc	1001~1600cc	1601~2000cc	2000cc초과
기존(cc당세액)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변경(cc당세액)	80원		140원	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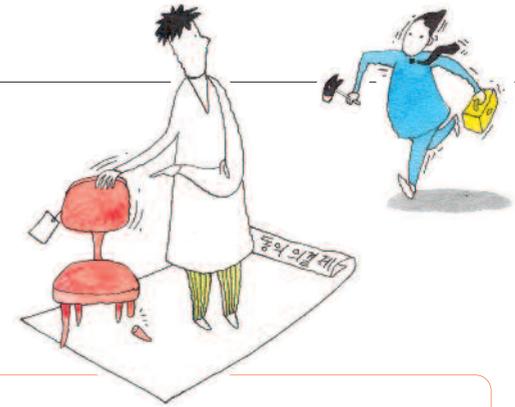
동의를결제의 도입으로 공정거래사건에서 소비자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동의를결제란 공정거래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의를결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동의를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인하, 피해배상 등 다양한 시정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위법 판정 대신 자율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사건을 종료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기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심인·이해관계인·관계부처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므로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중대하지 않은 단순 사건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시정이 가능해져 IT 등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범위만 행위로서 형사 처분이 필요한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연히 동의를결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동의를결이 허용됩니다.



1 외국의 동의를결 사례는? 1

1. 다이어트제 판매업자의 허위/과대표시 및 판매 사례(미국, '05.6월)

AVS Marketing사는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식사제한과 운동 불필요,” “모든 사용자가 실질적인 감량에 성공” 등의 허위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다이어트 제품과 그 밖의 제품에 대한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소비자 배상금으로 40만 불을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동의를결을 하였습니다.

2. 코카콜라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EU, '05.6월)

코카콜라는 EU 지역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기품목에 비인기 품목을 끼워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코카콜라가 무료로 제공하는 냉장고의 경우 유통업자가 다른 진열 공간이 없으면 20% 이상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코카콜라로부터 유료로 렌트한 냉장고의 경우 유통업자가 20% 이상의 공간에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채울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동의를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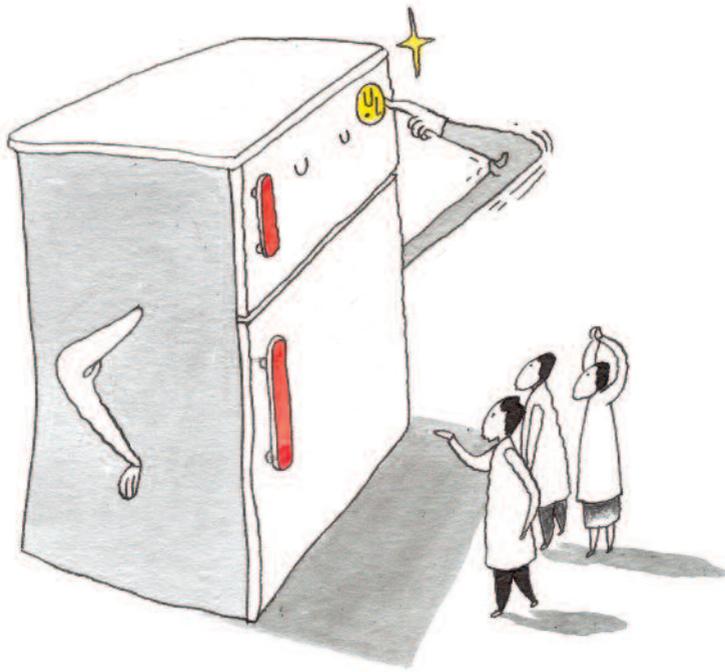
3.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사의 불공정 행위(미국, '07.6월)

음반회사인 Sony BMG Music의 음악 CD는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작동되도록 제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CD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Sony사의 음악 CD 작동을 위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중대한 보안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삭제도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피해 입은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수리비 목적으로 150불까지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동의를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의를결제를 통해 소비자는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표장 제도가 도입되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내실화되고
소비자들은 올바른 상품선택의
기준과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미 FTA는 상표·표장 등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FTA로 증명표장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데, 증명표장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명표장이란 쉽게 말해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상품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울 마크(Wool-mark) 는 국제양모사무국이 100% 신모(pure new wool)로 만들어진 섬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며, UL 마크 는 미국보험업자협회에서 전자제품이 안전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입니다.

기존에도 증명표장과 유사한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K마크와 같은 '인증마크'가 사용되어 왔고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제품이 일정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니다. '증명표장' 역시 품질인증의 측면에서 '인증마크'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인증마크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품질에 대해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금지권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증명표장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인증도 보호하므로 더 강력한 '재산권'적인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은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을 내실화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안전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명표장은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에 규정된 강력한 권리행사(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며, 증명표장을 재산권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인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비자를 자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그 동안 미국 현지법인으로 파견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 문제가 우리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목적으로 미국 현지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장기간의 체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현지법인 파견근로자(전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L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설사업체의 경우 1년, 기존사업체의 경우 3년밖에 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미국 장기 파견에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지사 파견을 위한 L비자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07년 이후 4년 동안 L비자 활용이 약 1만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파견자로 파악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기업내 전근자(L)비자 발급 현황(2007~2010)

	한국	호주	싱가포르	칠레
2007	4,209	2,618	661	460
2008	4,312	2,565	524	437
2009	3,488	2,080	448	373
2010	3,811	2,416	521	347
총계	15,820	9,679	2,154	1,617

출처 : 미 국무부

이에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L비자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그 결과 신설사업체와 기존사업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에 대해 L비자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L비자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L비자 유효기간 연장으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

미국 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생활,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L비자 유효기간 변화

사업체 유형	L비자 유효기간	
	기존	합의사록
기존 사업체	3년	5년
신설 사업체	1년	

- OO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씨, 미국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중인데, 미국에 입국할 당시에 3년짜리 L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후 비자를 연장하려고 보니 미국내에서는 비자연장이 되지 않아, 본인과 가족들 전부가 해외로 나가서 다시 비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했습니다. 비자가 종료되면 해외나 한국으로 출장갈 때 출장기간이 며칠되지 않아도 미국에 재입국 하려면 비자 재신청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운전 면허증 갱신 근거도 없어서 불편함이 많았지요. 이제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가워합니다.
- 최근 아시아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도 진출하기 위해 P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키로 하였습니다. 신생 기업의 파견근로자라고 1년짜리 비자를 받았던 P부장은 미국 입국후 9개월만에 다시 비자 연장을 위한 신청서류 준비를 해야했고, 2년씩 연장되어 미국체류 5년간 2번이나 비자를 연장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해외로 나가 서류를 갖추어 비자 연장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했지요. 이제 P부장과 같은 신생기업의 파견근로자도 5년짜리 비자를 처음부터 발급받게 되면서 시간, 돈 등 낭비를 줄이고, 비자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에는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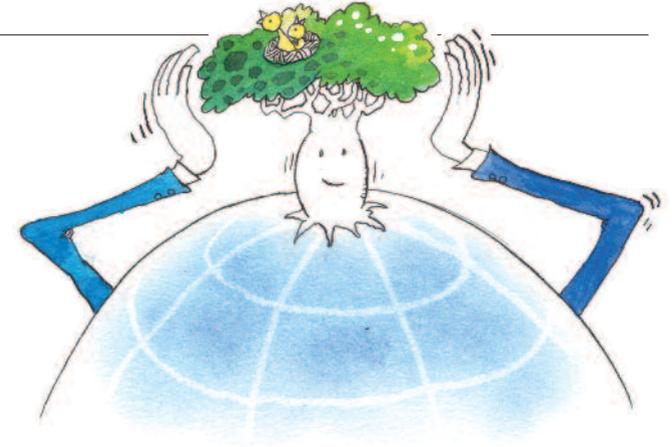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의 공산품과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및 식품 등 각종 다양한 식재료들의 교역도 증대됩니다. 특히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농축산물과 식품은 철저한 수입 위생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먹거리만 국내에 유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되는 식재료들은 대량 생산되고, 대량 운송되며, 장기 보관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관세로 값싸고 품질이 낮은 식재료들이 대량 수입 및 유통되어 우리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않을까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FTA로 수입되는 각종 농축산물 및 식품류에 대해 위생검사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만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구매할 때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분야를 우리 정부 조달 의무의 예외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이에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한·미 FTA 내용과 무관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학교급식 정부 조달 의무 규정 예외 및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우리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양국의 환경정책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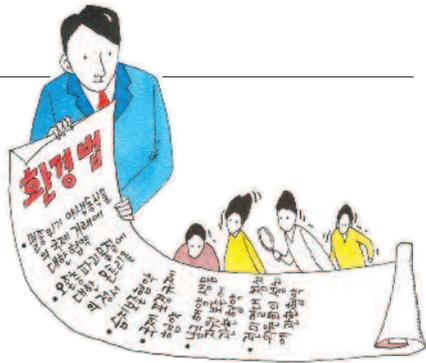
한·미 FTA는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국내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협정에서 규정한 환경의무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양국 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한·미 환경협의회를 설치하여 양국의 환경 사안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정부간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연구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며, EU와 더불어 선진 환경정책 및 제도를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환경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법 준수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됩니다.



한·미 FTA는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켜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이해관계인이 정부에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 무역을 위한 환경법 위반을 일반 대중들이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한·미 환경협의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하도록 하고, 회의 결과가 대중들에게 공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한·미 FTA는 국내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하여 국내 환경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여부를 이해관계자가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개인(私人)이 환경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보 및 의견교환을 한미 양국에 요청하고 서면으로 입장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환경법 이행에 있어 대중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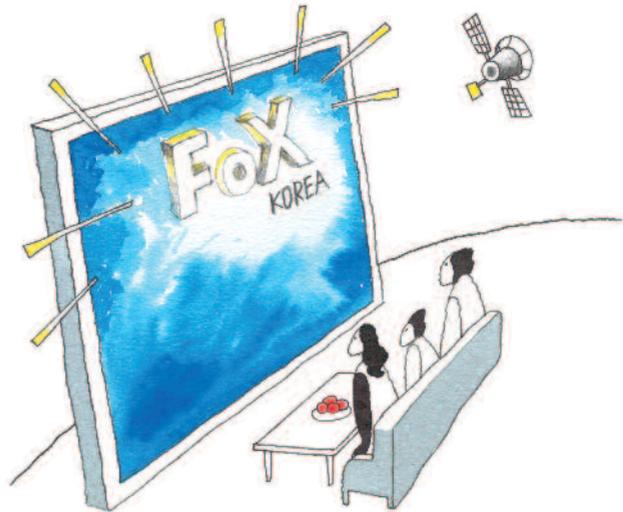
문화생활

이제 미드가 미국과 동시 방영된다고?

국내 방송서비스의 일부 개방을 통해,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은 인기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방영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방송서비스 시장도 일부 개방되어 방송채널이 다양화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미 FTA로 외국방송사들이 보도·종합편성·홍소핑을 제외한 일반 방송 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일반 방송 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의 방송채널 사업자가 한국에서도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의 폭스 TV가 직접 국내에 폭스 TV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폭스 TV코리아를 설립한 뒤 폭스 코리아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소비자들에게 미국의 드라마, 다큐 등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폭스 TV 코리아 채널이 만들어지면, 미국 폭스TV가 미국 내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인기드라마를 방영할 때, 한국에서도 동시에 폭스 코리아 채널을 통해 방영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 방송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다양한 방송채널과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적용되는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한이 완화되어, 시청자들은 해외의 우수한 방송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한·미 FTA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짐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는 한편, 우리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의욕을 자극하게 되어 보다 양질의 다양한 방송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방송시장 개방 내용

구분		현행 개방수준	한·미 FTA 발효 후 개방수준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한도	간접 투자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에 대한 투자가 49%까지 가능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에 대한 투자가 100% 가능 (한·미 FTA 발효후 3년이내) ※ 보도·종합편성·홍소핑 PP 제외

※ 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한·미 FTA로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방송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미드(미국드라마), 일드(일본드라마), 중드(중국드라마) 등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청자들의 입맛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영화, 게임, 음반, 공연, 방송 등 탄탄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한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문화콘텐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국산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완화되어, 시청자들은 보다 다채로운 해외의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경우 국내물 편성을 80%,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을 45%, 영화 25%, 대중음악 60%로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의 문화콘텐츠 역량을 기르면서 다양한 해외 방송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미 FTA는 보다 풍성하고 질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켜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을 자극하게 하므로, 우리의 문화콘텐츠의 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방송시장 개방 내용

구분		현행 개방수준	한·미 FTA 발효 후 개방수준
편성 쿼터	비지상파 장르별 국내편성 쿼터	• 영화 : 25%	→ 20%
		• 애니메이션 : 35%	→ 30%

한·미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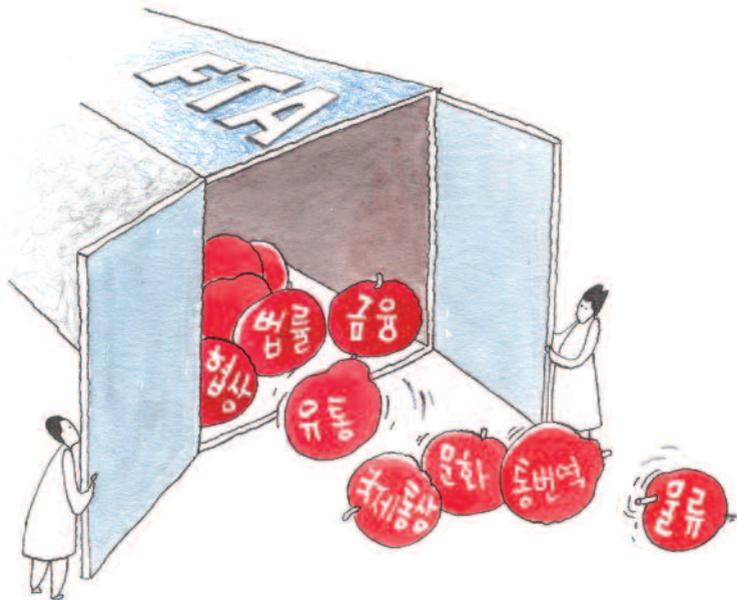


교육·고용

FTA 시대의 유망직종은?

미국과의 경제·문화적 교류가 늘어 국제통상 분야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제통상, 통번역, 협상, 물류, 유통, 문화, 금융, 법률 등의 직종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미국과 통상·투자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국제통상,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업무 종사 변호사 및 컨설턴트의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수요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 간 민간, 기업 및 정부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영어 능력을 포함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전문성, 창의성 등이 한층 요구되고, 이에 따라 통번역사 및 각 분야의 전문 협상가도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허권 강화와 관련된 변리사, 국제 교역 증대와 더불어 관세사·물류관리사 등도 인기를 얻는 직업군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식기반 전문직과 경력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방화의 가속화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마케팅과 브랜드, 연구개발 관련 전문가, 기업인수합병 전문가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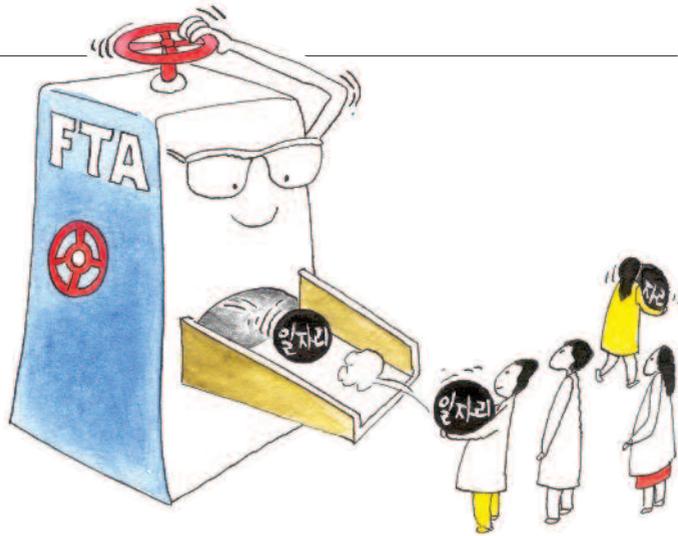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자산운용, 위험관리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수요가,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부문보다 애프터마켓에서 인력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약품 및 의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의약품공학기술자, 의약품 특허전문가, 임상관리사 등 기술개발 인력과 신약의 마케팅을 위한 제품관리자 및 품질관리자의 수요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판, 영화, 게임, 방송 등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기획 등 전문인력과 마케팅 인력의 수요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과 향후 국내외 법률회사 간 업무제휴 등으로 경력직 변호사와 법률 관련 직종도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한·미 FTA 이후의 산업별 직업 인기도

산업	뜨는 직종
법률서비스	변호사, 법률사무원, 변리사
금융	투자분석가, 신용분석가, 금융자산운용가
문화	시나리오 작가, 영화 프로듀서, 게임 기획자, 게임 음향 효과 디자이너, 성우, 번역가
자동차	디자이너, 정비원, 수입차영업원, 튜닝전문
섬유	상품기획자, 텍스타일 디자이너, 원단/소재 연구개발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한·미 FTA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계 각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FTA 체결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어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해외투자도 증대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특히 한·미 FTA는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11년, 10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국민 소득이 5.66% 증가하고,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득증대로 소비자 후생도 단기적으로는 5.3억불, 장기적으로는 321.9억불이 늘어나며, 외국인 투자도 10년간 매년 23~32억불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단기적으로는 2,700개의 일자리가, 장기적으로는 약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지식기반 전문직과 경력직 등을 요구하는 금융, 보험, 컨설팅, 의료서비스, 출판·방송·게임 등 문화 서비스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조업 역시 한·미 FTA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는 분야로 단기적으로는 2,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 약 8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 섬유, 전기, 전자 등의 업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실제로 FTA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멕시코의 NAFTA 체결인데, OECD(2004)에 따르면, NAFTA 체결('94) 이후 멕시코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의 질도 좋아지면서 고용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93년도의 멕시코 취업자수는 3,130만명에서 '03년에는 3,970만명으로 10년 동안 27%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한·미 FTA를 통해 산업 모든 전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서는 일시적인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실업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로 부득이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직기간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경제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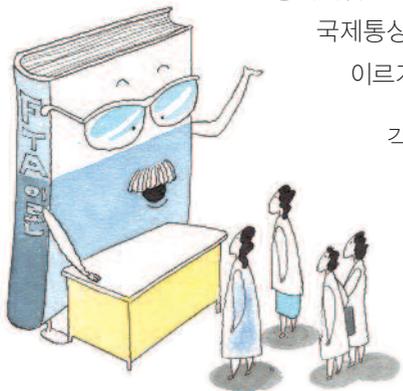
대학에서도 정규과목으로
FTA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FTA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미 FTA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게 미국시장을 선점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의 발효와 더불어 FTA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 내에서도 FTA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FTA와 관련한 기초 이론을 가르치고 관세·통상 분야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전국 23개 대학에 35개 강좌가 운영되었으며, 2012년에는 전국 28개 대학에 41개 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개설된 강좌는 FTA 통상론(인하대), 글로벌 시대와 FTA(충남대) 등 FTA에 대한 기본 이론 강좌에서부터, FTA와 비즈니스 모델(인천대), 관세법과 FTA(한남대), FTA와 국제 상거래(부산대) 등 FTA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명하고 국제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강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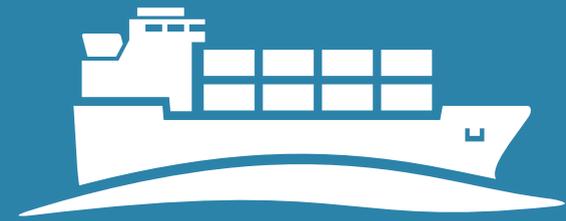
각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국제무역·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개설된 과목을 통해 FTA 협상에 대한 기본 내용과 산업별, 분야별 협정내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제도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한·미 FTA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관세인하 및 철폐를 통한 특혜를 받아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기업 납품을 통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증대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한·미 FTA로 달라지는 관세 및 통관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한·미 FTA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입니다.

한·미 FTA 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高GO!



한·미 FTA와 중소기업

—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한·미 FTA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 FTA를 통해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관세 2.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크게 작용하여 대미 수출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기은경제연구소에서 2007년 실시한 “한·미 FTA가 우리 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의 54.7%가 한·미 FTA 체결의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 납품업체의 대미 수출확대에 따른 매출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한·미 FTA로 인해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대미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조업 평균 관세율은 7.5%로 우리의 관세 철폐시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중간재 수입비용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원이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국제수준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비즈니스여건이 개선되고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미 FTA를 통해 중소기업은 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Made in Korea”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산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대미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분야 수출액 중 비중이 37.9%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한·미 FTA 발효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중소기업체의 A/S부품, 현지조립용 부품 수출이 연평균 1.3억불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볼트·너트는 특성상 다수의 작은 업체가 지역 공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5.7~12.5% 수준의 고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산과 대만산의 가격 차이는 5~10%내외로 관세 철폐시 이들 나라 제품 대비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볼트와 너트 뿐만 아니라 엔진블록, 피스톤 샤프트 등 냉간단조부품, 자동차 공조용 부품, 브레이크 패드, 에어백의 대미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국내의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냉간단조부품 등의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제품에 비해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배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자동차 부품 수출증가 전망

품목명	관세(%)	양허유형	증가 사유
볼트·너트	5.7~12.5	즉시철폐	고관세 철폐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 제고
자동차 공조용부품	0~2.5	즉시철폐	관세철폐로 한국산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 바이어에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
냉간단조부품(엔진블록, 피스톤 등)	0~2.5	즉시철폐	관세철폐로 중국산 대비 가격 열위는 보강, 일본산 대비 가격 우위는 강화
브레이크 패드	2.5	즉시철폐	한국산 품질은 이미 인정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까지 제고 된다면 수출 여건 대폭 개선 전망
에어백	2.5	즉시철폐	중국산 제품의 품질관리 문제와 일본의 대지진 이후 부품공급 차질로 반사이익 기대

섬유산업은 평균 13%의 미국 관세 철폐 시 연간 1.5억불의 수출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섬유산업은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는 약 13%입니다. 만약 한·미 FTA로 미국의 섬유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연간 1.5억불의 수출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섬유의 주요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섬유사는 현재 중국과 한국이 미국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제품에 해당하는 중국, 인도, 태국산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의 바이어들은 제품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되어 4.3%의 관세가 철폐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제품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말의 대미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말의 경우는 13.5%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한국 양말산업은 중국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자동화된 생산방식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낮아 한·미 FTA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섬유 제품 수출증가 전망

품목명	관세(%)	양허유형	증가 사유
폴리에스터 섬유	4.3	즉시철폐	면화가격 급등 및 생산원가 절감위해 폴리에스터 혼방비율이 확대되면서 현지수요급증
여성용 드레스	14.9	즉시철폐	드레스는 소량 다품종 생산가능 품목으로 국내로 생산기반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
인조섬유 편직물	17.2	즉시철폐	면화가격 급등으로 인조섬유 편직물 수요 증가
양말	13.5	즉시철폐	고관세 철폐, 상대적으로 충분한 국내 제조기반

기계산업은 연간 0.6억불의 수출 증가가 전망됩니다.

기계산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기술개발이 확대되고, 부품단가가 하락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계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작기계는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추세에 있어 4.2%의 관세가 즉시철폐되면 4.2천~8.4천불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출금형, 철주물 피팅제품, 펌프 등 가격경쟁이 치열해 관세철폐가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볼베어링의 경우에는 9%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요 기계 제품 수출증가 전망

품목명	관세(%)	양허유형	증가 사유
공작기계(머시닝센터)	4.2	즉시철폐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추세
플라스틱사출금형	0~3.1	즉시철폐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로 경량화를 위한 수요증대 예상 고가 제품으로 절대적인 관세철폐 금액이 큰 편
볼베어링	9.0	10년 균등	가격 경쟁이 치열해 관세철폐로, 한국산 수출 확대 기대
철주물 피팅 제품	5.6	즉시철폐	경기회복으로 자동차 산업 등에서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전망
펌프	2.5	즉시철폐	경쟁 제품간 품질이 대동소이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데, 관세 철폐시 한국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전기·전자 산업은 헤어드라이기,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을 중심으로 1.6억 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FTA로 전기, 전자 산업의 대미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전자 산업 중 대미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주요 품목은 컬러TV, 축전지, 헤어드라이기를 비롯하여 풍력발전세트, 고데기, 전기제어판,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세트의 경우 유럽제품에 비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는 않지만, 향후 미국 시장 내의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제품이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제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고데기의 수출증대도 기대됩니다. 한국산 고데기의 경우 고가 전문가용 헤어스타일링 기기에서 인지도가 높아,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되면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전기 제어판의 경우 절전형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세 철폐시 일본산에 비해 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미국내의 제품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주요 전기·전자 제품 수출증가 전망

품목명	관세(%)	양허유형	증가 사유
풍력발전세트	2.5	즉시철폐	미국 풍력 터빈의 100%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움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 수요가 더욱 확대 예상
헤어 플랫 아이언 (고데기)	0~2.8	즉시철폐	한국산은 고가 전문가용 헤어스타일링 기기에서 인지도가 높아,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되면 수출 확대 기대
전기제어판	2.7	즉시철폐	절전형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로 전기제어판 수요 증가 관세 철폐시, 중국산 보다는 일본산과 캐나다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터치스크린모니터	2.7	즉시철폐	비용절감을 위한 셀프 계산대 및 키오스크 설치 증가로 수요 다대 중국산과 멕시코산 보다는 일본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염료, 안료, 접착제 등 섬유화학 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섬유화학 산업은 '10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수지 적자(26.7억불)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미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유화학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폴리스틸렌의 경우 우리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품질은 경쟁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 발효로 관세 6.5%가 즉시철폐되면,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에폭시수지의 미국 시장규모는 매년 3~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마트폰·PC 태블릿 등의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라 광섬유 케이블 시장이 커져, 동제품의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화학 등 기타 제품 수출증가 전망

품목명	관세(%)	양허유형	증가 사유
폴리스틸렌	6.5	즉시철폐	경기 회복에 힘입어, 주택건설용 및 요식업용(포장재) 수요가 증대
비접착성 판, 슈트, 필름	5.8	즉시철폐	최근 미국산을 아시아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 강화
에폭시수지	6.1	즉시철폐	금년 고기능성 에폭시 합성수지 수요는 전년 대비 9% 증가 예상
아크릴 폼 테이프	4.2~6.5	10년 균등	10년 균등 철폐 품목이나 가격 경쟁이 치열해, 3년 내 가격 경쟁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제고될 전망
광섬유케이블	6.7	즉시철폐	스마트폰·PC 태블릿 등의 3G/4G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증가에 힘입어 광섬유케이블 수요도 동반 증가할 전망

미국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수준이 인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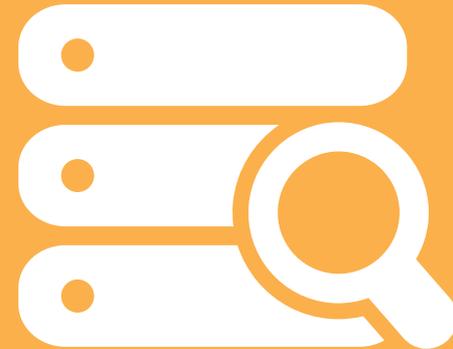
미국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수준이 20만\$에서 10만\$(우리측 2억원→1억원)로 인하여, 공구절삭기, 문서세단기, 리튬 전지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공구절삭기의 경우 미국 육·해·공군에서 사용되는 탱크, 비행기 수리에 사용되고,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수요가 높은 편이며, 한국산의 인지도도 높아 관세(4.2~4.7%) 철폐로 인한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의 경우는 품질은 높으나,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와 더불어 이러한 유통망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대표적인 조달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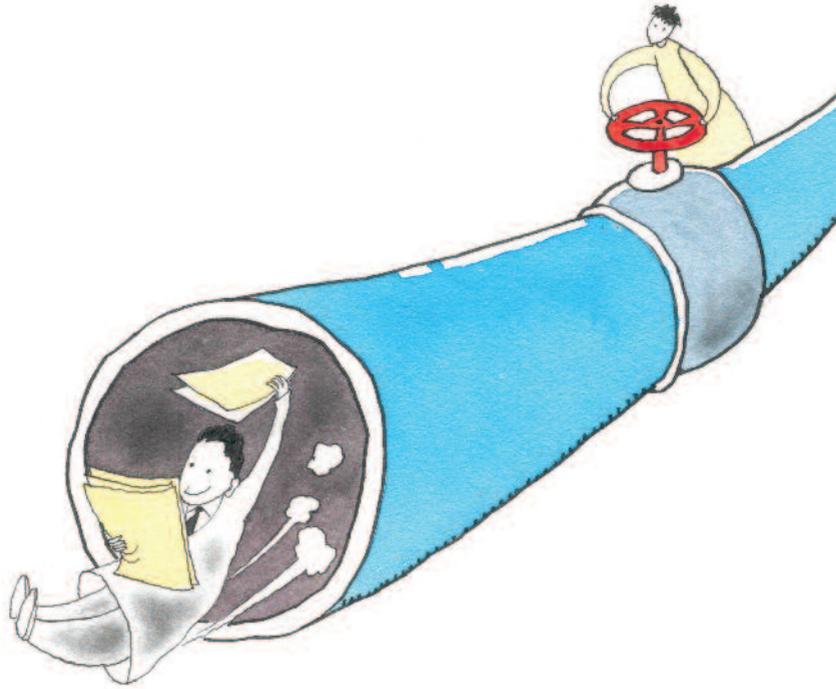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리튬전지의 경우는 미국내 공급이 크게 부족한 반면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에서 친환경 전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향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역시 유망한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한·미 FTA 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高GO!



관세 및 통관절차

—
달라진 관세 및 통관절차 바로알기



한·미 FTA시대의 기업활동,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 기업들에게 FTA는 관세 인하·철폐로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받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한·미 FTA로 달라지는 관세 및 통관절차를 확인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FTA 활용의 첫걸음입니다.

한·미 FTA 시대에 FTA 특혜 통관절차, 이것만은 꼭 기억 하세요



미국으로 자사의 상품을
수출, 혹은 미국산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첫째, 수출국(수입국)이 FTA 협정 발효국인지 확인하기

FTA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정국가와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FTA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페루·ASEAN·인도 등 전세계 44개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FTA도 발효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 둘째, 수출(입) 상품의 품목번호 (HS CODE) 확인하기

FTA 체결로 인한 특혜 협정세율은 수출 혹은 수입하는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정해 집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수출 혹은 수입하려는 상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 품목번호는 수출 상대국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수출업체의 경우 품목번호의 6단위 이하까지 전체번호를 알아야 상대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단위는 전 세계 공통이므로 6단위까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관세청 고객센터 문의 1577-8577
- 6단위 이하는 관세청·무역협회·KOTR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db.kita.net>
 - KOTRA 관세율표 FAX 서비스: <http://www.kotra.or.kr>

>> 셋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수출 혹은 수입 상품이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품목이라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한·미 FTA 이전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이 0%라면 FTA로 인한 혜택이 없겠죠!

>> 넷째,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하기

미국에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한다고 바로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해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 한·미 FTA의 경우에는 자율증명 발급으로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가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증명 절차



>> 다섯째, 협정세율 적용신청하기

증명서 발급기관, 양식, 인장, 원산지결정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관련서류 보관하기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발급제를 택한 대신 사후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통관절차를 종료한 후 사후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출입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에 이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신청함으로써 수출기업도 한·미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각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협정별로 정한 서식대로 작성해야 하나, 한·미 FTA는 협정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협정상외의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종류	적용국가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 APTA 등 일반특혜 협정국
원산지 신고서 (Origin Declaration)	EFTA, EU
연결원산지 증명서 (Back to Back Certificate of Origin)	ASEAN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부여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인데, 한·미 FTA는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FTA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1년	1년	1년~2년	4년
사용 언어	영어 사용 원칙					유럽공동체 당사국 언어 및 한글	영어사용 원칙	영어·한글

- 기관 발급**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FTA 및 일반 특혜협정은 기관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자율 발급** 한·미, 한·EU, 한·EFTA, 한·칠레, 한·페루 FTA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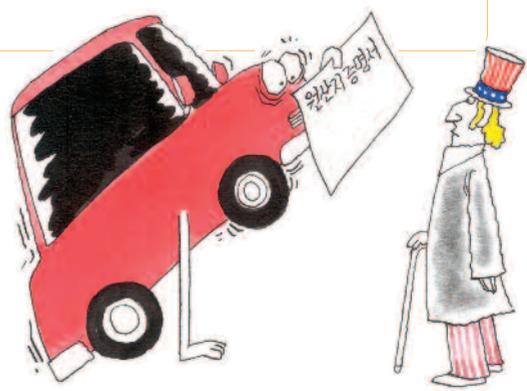
따라서 한·미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판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자는 미국측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비로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입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해야 하는데 한·미 FTA 협정문은 다음의 사항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한 증명인의 성명
- 상품의 수입자(알고 있는 경우),
-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상품의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
-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그리고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대규모 분할 선적물품의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포괄 증명도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들을 최소 5년간 보관·유지 하여야 합니다.

수출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통관당국은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대신 허위 증명서 발급 및 특혜관세 적용을 막기 위해 통관 이후 5년간 원산지 관련 기록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미국의 수입자에게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미국의 수입자가 미국에서 한·미 FTA 특혜 관세대우를 신청했다면,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한 상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유지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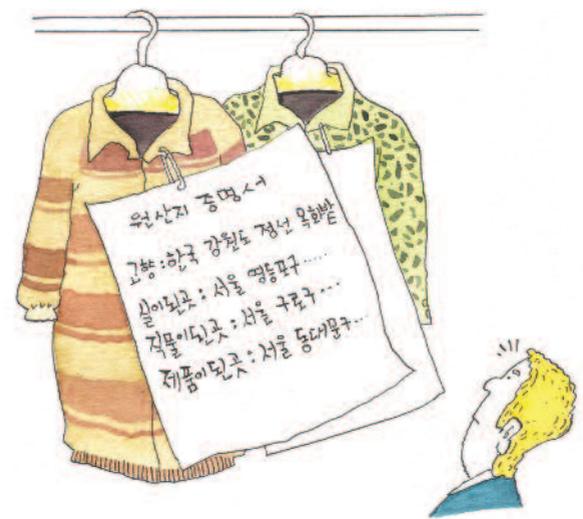


- 수출자·생산자가 반드시 보관·유지해야 할 기록**
-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기록
 -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기록
 -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에 관한 기록
 - 양 당사국(한·미)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마찬가지로 국내 수입자 역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였다면, 미국 수출자·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통관 및 환적 서류,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유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을 반드시 서류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보관·유지하는데 있어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 및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 중에서 선택하여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사기준(Yarn-forward)이 적용되어 실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역내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섬유제품은 원료에서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섬유원료를 섬유(fiber)상태로 만들어 방적을 거치면 실(yarn)이 되고 실로 천을 짜는 제직을 거치면 직물(fabric)이 되며,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하면 최종제품인 의류(옷)가 됩니다.



한·미 FTA는 의류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실(yarn)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물을 만드는 공정, 재단·봉제 공정까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수행되어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사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 증명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 셔츠 등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여했으며, 일부 미국이 제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원사기준의 적용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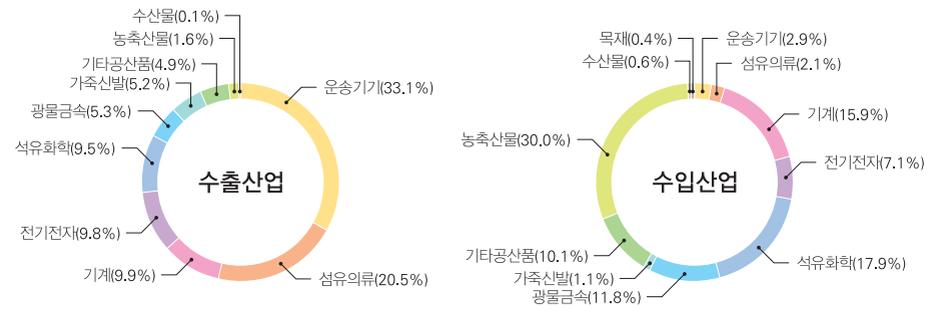
분류	원산지 기준
가방(HS 420212, 22, 32, 92)	편직, 재단 및 봉제
린넨직물(5311)	제직
여성편물재킷(610433, 39)	편직 및 봉제
면/인조섬유제 남성셔츠(620530)	재단 및 봉제
아크릴, 레이온, 리오셀 등 재생 섬유소재사	역외 조달 허용

자동차, 섬유·의류 등 주요 수출품이 미국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로 자동차, 섬유·의류 등 수출 효자 품목들의 수출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입니다. 그런데 일본차와 가격차가 있는 중소형차의 경우 0.5%미만, 중형차급은 4%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2.5%의 관세철폐는 우리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어 수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섬유의 관세율은 12.5%로 미국 전체 산업 평균 관세가 1.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15% 이상의 고관세를 두는 품목도 전체 섬유 산업의 13% 정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철폐는 우리 섬유 제품의 수출에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수출입산업의 관세혜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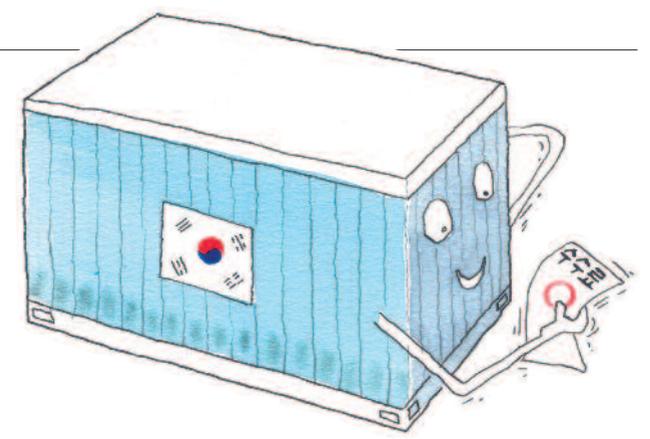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운송기기, 섬유 의류,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산업 순으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농축산물, 화학, 기계, 광물금속, 기타공산품 순으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마다 각각 상이하므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자는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신고요령을 숙지한 후 협정문에 명기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

품목	원산지 기준
농산물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 적용
자동차	순원가법(Net Cost)-35%, 공제법(Build-Down)-55%, 집적법(Build-Up)-35%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
화학제품	미국의 주요공정기준과 우리의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인정
기계, 전기전자, 철강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채택 양국 산업의 민감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기준 적용
신발	우리 주력 수출품에는 역외산 갑피 사용이 인정 일부 예외품목에 대하여만 역내산 갑피 요건을 적용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가 철폐되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통합예산총괄조정법에 의거하여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물품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불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0.2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했고, 2,000불 미만의 물품은 자동신고시 2불, 수동신고시 개인은 6불, 세관은 9불을 부과하여, 물품취급 수수료가 우리 수출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해 물품취급수수료와 항만유지 수수료를 면제해줄 것을 미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미측이 받아들여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철폐되었습니다.

물품취급수수료 철폐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비용을 감안하면, 연간 8,000만불로 추정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高高GO!



지식재산권

—

한·미 FTA 시대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 강화된다던데? ‘한·미 FTA 시대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국가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 층 더 강화했습니다.

실연자(가수, 연기자 등)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호기간이 실연 또는 음반 발행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 현상으로 인해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저작권의 해외진출을 국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앞으로 우리의 저작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발효 후 2년), 한·미 FTA는 저작물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의 경우에도 보호기간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기자, 배우, 가수 등의 ‘실연자’와 음반 기획에서 고정예에 이르는 과정을 책임지고 기획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호기간이 실연을 한 때부터 또는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저작권법상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2조 4호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2조 6호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또는 ‘실연·음반에 대해 70년 동안 보호해 주는 국가’의 실연·음반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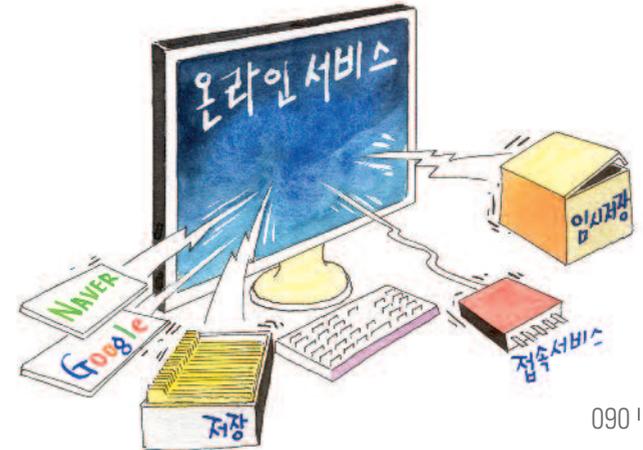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세분화됩니다.

한미 FTA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종류가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인터넷망 서비스제공업체나 웹하드, 포털 등이 모두 OSP로 통칭되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서비스 유형이 ①인터넷 접속서비스 ②캐싱서비스 ③저장서비스 ④정보 검색도구 서비스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법상 책임제한요건이 차별화됩니다.

OSP의 서비스 유형 분류

OSP의 서비스 유형	기술적 특징
인터넷 접속서비스	인터넷 접속서비스통신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캐싱서비스	콘텐츠를 캐시서버에 저장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
저장서비스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자료를 저장·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정보검색도구 서비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



이에 따라 각 OSP 서비스 유형별로 책임 제한 요건이 아래 표와 같이 차별화, 구체화 됩니다.

OSP 서비스 유형별 책임 제한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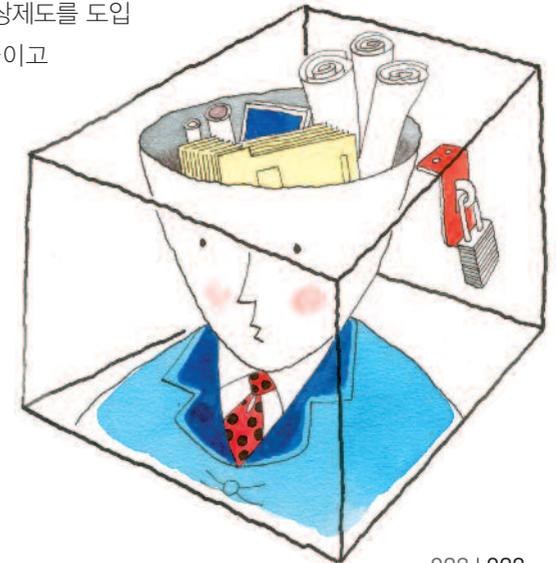
책임 제한 요건	서비스 유형	접속(도관)	캐싱	저장	정보검색도구
저작물 등의 송신 미개시		○	○	○	○
저작물 및 수신자 미지정		○	○	○	○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		○	○	○	○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	○	○	○
저작물 등의 변경 없이 후속 이용자에게 송신			○		
일정조건 충족하는 이용자만 캐싱된 저작물 접근허용			○		
복제·전송자가 제시한 현행화 규칙 준수			○		
저작물 이용 정보를 얻기 위해 산업표준에 합치되는 기술 준수			○		
본래의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게 조치된 저작물 사용 금지 조치 실시			○		
침해행위 통제 권한·능력 존재, 직접적 금전적 이익 미발생				○	○
침해행위 인지도 해당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 조치 실시				○	○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				○	○

우리 기업, 발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한층 더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권리 구제가 쉬워집니다.

상표권 침해 발생시 상표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표권자 또는 상표 전용 사용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공지예외 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되며, 특허 등록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예외적으로 출원이 가능한 기간(공지예외 적용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됩니다.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발명자에게 특허출원 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발명자가 특허출원 준비에 더욱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양질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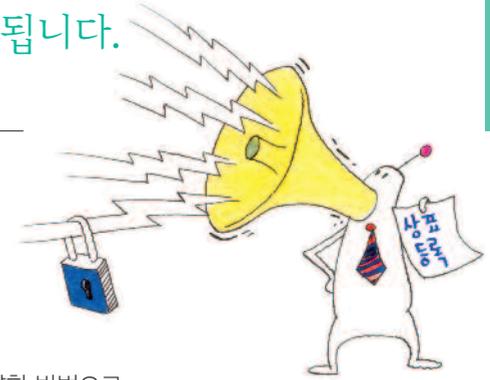
또한 그동안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존속기간연장제도를 모든 특허에 확대 적용하여 출원인에게 기인되지 않은 사유로 특허 등록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상표권자·특허권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상표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등록 의무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상표권리자 사이의 사적 계약만으로도 상표의 전용사용권이 인정 받게 됩니다. 이에 상표사용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취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정부나 제3자가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자가 또 다시 2년간 특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 또는 특허청장 직권으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취소제도'가 존재하여 특허권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계기로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취소제도'를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전망입니다.

한·미 FTA로 소리·냄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만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마케팅 수단의 진화로 기업들은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미 FTA 협정문은 종전에는 상표로 보호하지 않았던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리·냄새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인텔의 효과음, 레이저젯 잉크의 레몬향, 야후의 야~후라는 소리 등이 소리·냄새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땡땡 띠리띠'이라는 특정 효과음을 들으면 '인텔'을 떠올리고, 잉크의 레몬향을 맡으면 '레이저젯'을 떠올리므로, 소리·냄새가 상표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표로서 기능하는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케팅 수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제도의 변화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표장'을 활용하고 상표로 등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리·냄새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상표와는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냄새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시각적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이 있어야만 상표가 보호받는 범위가 확정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음악으로 된 소리에 대한 시각적 표현은 '악보'로 할 수 있으며, 악보로 불가능한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를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시각적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제약품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하고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주장시 일정기간 허가가 정지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은 크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란 제약업체가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권을 지니고 있는 약품이며, 제네릭 의약품이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이를 복제하여 시판하는 복제 의약품입니다.

이제까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되면 국내외 제약업체들이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시판에 대한 허가를 받아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여 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한·미 FTA 협정을 통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여부를 의약품 시판허가 사전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특허기간 도중에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려는 제약업체들이 식약청에 품목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업체는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통보의무-신청자)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후발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시판방지조치 의무-식약청) 제도를 말합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의약품의 특허권을 보호해 제약업체의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 업체들이 특허목록을 통해 쉽게 특허정보를 알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허가 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시판방지 조치의무의 이행을 3년 유예하여 국내 제네릭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허가 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시판방지 조치의무의 이행을 3년 유예하여 국내 제네릭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기간을 마련하였지만, 한·미 FTA 발효 후 3년 이후부터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있어야 복제약을 시판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高GO!



FTA 활용지원 제도

FTA 100% 활용하기



이것을 알아야 성공한다. '기업의 FTA 활용 지원제도'

정부는 우리기업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FTA 닥터)할 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원산지관리 프로그램(FTA-PASS)을 보급하는 등의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시행중입니다.

기업 FTA 활용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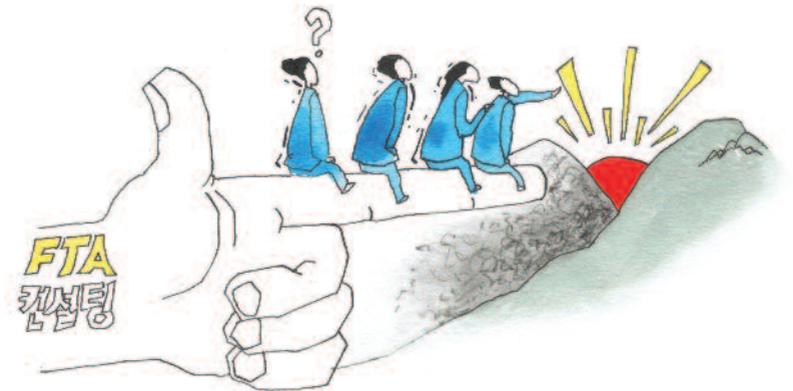
유형	내용
FTA 닥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무료 컨설팅 서비스 제공
FTA-PASS	FTA 활용기반이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FTA 홈페이지 운영	유관기관의 온라인 FTA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과 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를 돕고 FTA 활용정보를 제공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주요 광역시도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지원

FTA를 활용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FTA 활용 컨설팅(FTA 닥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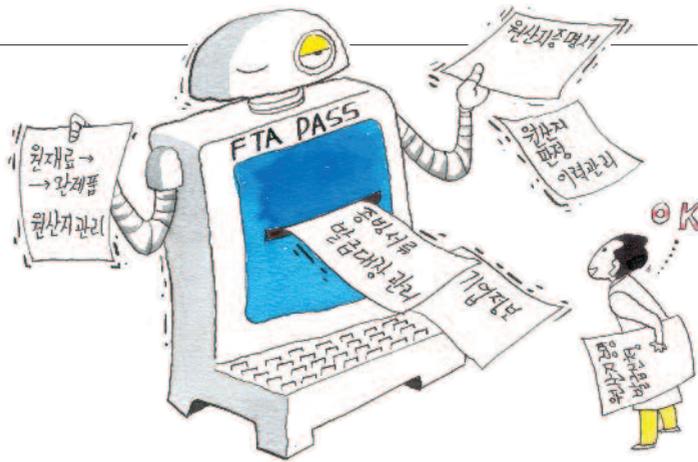
FTA 닥터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FTA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기업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국제 원산지 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FTA 활용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origin.or.kr>)에 접속하여 민간 컨설턴트의 컨설팅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 신청을 하시면 세관직원 또는 관세사 등 컨설턴트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 협정적용 대상여부,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PASS'로 복잡한 원산지 관리가 보다 수월해 집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관세철폐와 해외시장 확대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체결국간의 상호 이익을 목표로 하는 FTA 특성상 원산지 증명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더 나아가 사후 원산지 검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과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원재료 조달과 재고 관리와 원산지관리 증명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PASS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FTA-PASS는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기가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 및 원재료 생산업체를 위해 UNI-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기반으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FTA-PASS 프로그램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origin.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TA-PASS를 통해 원재료부터 중간재 및 완제품까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는 물론이고, 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인증수출자 신청업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입 통관 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판정 이력관리와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대장관리가 가능하고, 본 시스템에 담긴 기업정보의 장기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웹용 FTA-PASS를 개발하여 2011년 10월 4일부터 FTA-PASS 홈페이지(<http://ftapass.or.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11월부터는 원산지판정, 확인서 발급 등 간단한 기능을 제공하는 영세업체용 FTA-PAS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니, 기업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FTA 종합지원포털'을 방문하시면 손쉽게 한·미 FTA에 대한 활용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 실무자들에게 FTA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FTA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콘텐츠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알맞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FTA종합지원포털(<http://www.ftahub.go.kr>)은 FTA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인의 이해를 돕고, FTA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만화, FTA소식, FTA세상 등을 통해 다양한 FTA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전북 등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어 지역별 활용지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한·미/한·EU 등 주요 FTA의 협정문 정보와 주요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은 통관절차에 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FTA 상대국에 대한 세율 및 원산지결정 기준 정보, 협정국 품목분류(HS) 검색과 더불어 FTA 수출입 활용 방법, 원산지검증,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등 기업실무에 필수적인 자료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세청은 최근 FTA 매뉴얼, 협정을 조회 등 FTA 활용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스마트 FTA'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 FTA는 앱스토어에서 'FTA'로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FT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관 업무 특색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6개 FTA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활용 지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현재 전국 15개 지역에 16개 FTA 활용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는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FTA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각종 활용 지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 문의 전화번호

경기 FTA 활용 지원센터	031-259-7204	경기(북부) FTA 활용 지원센터	031-259-7204
인천 FTA 활용 지원센터	032-810-2852	강원 FTA 활용 지원센터	033-256-3068
대구 FTA 활용 지원센터	053-751-5765	충북 FTA 활용 지원센터	043-229-2721
부산 FTA 활용 지원센터	051-990-7082	충남 FTA 활용 지원센터	041-539-4504
울산 FTA 활용 지원센터	052-287-3060	전남 FTA 활용 지원센터	061-282-9774
광주 FTA 활용 지원센터	062-350-5864	경북 FTA 활용 지원센터	054-454-6601
대전 FTA 활용 지원센터	042-480-3042	경남 FTA 활용 지원센터	055-210-3005
전북 FTA 활용 지원센터	063-711-2045	제주 FTA 활용 지원센터	064-757-2164

또한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등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기회 포착, 생산, 수출, 사후검증 등 전 단계에 걸쳐 기업들의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FTA콜센터(1566-5114) 및 홈페이지(www.okft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高GO!



기타

달라지는 자동차 환경·안전기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FTA 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개성공단에서 스웨터를 생산하는 A 중소기업을 포함한 122개 기업도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라는 양국간 협의 채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는 발효 후 가동될 이 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협의를 진행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양국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성공단을 비롯한 일정한 북한내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 근로 기준 등

이렇게 양국간 협의와 절차를 통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에서 스웨터를 생산하여 그동안 국내 시장에만 판매해왔던 ○○ 중소기업은 눈을 돌려 더 큰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미국 수출시 32%나 되는 스웨터에 대한 관세를 전혀 물지 않게 됩니다. 스웨터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받아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대부분의 섬유·신발·기계금속·전기전자 업종의 기업들이 자사가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게 될 제품에 대해 관세 철폐의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개성공단과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한미 양국의 안전기준이 유사하고 일부 기준은 미국이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승용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25,000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양국의 교통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다르게 제정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일부 우리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기준으로 안전성 적합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 기준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강화와 더불어 외국의 제작결함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여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리콜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기준도 완화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환경기준도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4,500대 이하로 수출할 경우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배기가스기준('15년부터 연비 ℓ 당 17km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km당 140g 이하)보다 19% 완화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녹색성장 등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10.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2년부터 실시되는 제도로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특히 판매량이 소규모인 제작사에 대한 환경기준 예외조치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이 공통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모든 제작사 및 수입사가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목표 기준을 충족할 경우, CO₂ 감축량은 연간 419,983톤인 반면,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로 영향을 받게 될 CO₂ 감축량은 연간 4,834톤으로서 1.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국내보완대책 편

한·미 FTA로 농산물수입이 늘어난다는데... 농어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기를 기회로!
열위에서 우위로!
경쟁력있는 농어촌으로!



한·미 FTA를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FTA로 인해 국내 경쟁력이 낮은 부문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FTA 발효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게 되면, 농수산업은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제조·서비스업은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FTA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피해의 보전과 더불어 비록 현재는 다소 경쟁력이 부족하더라도, 미래에 경쟁력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방의 파고를 뛰어넘는 국내보완대책



농수산업 분야

—
위기를 기회로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07.4월)을 계기로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1.1조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을 마련하여 '0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월에는 기존 FTA보완대책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의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 현대화를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22.1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어가 경영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하여 '12.1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된 대책을 포함하여 농어민, 중소기업의 우려해소를 위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농어가·중소상공인 영농·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재정지원 지원규모를 24.1조원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세제지원 규모 29.8조원을 포함할 경우 '08~'17년 간 총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는 마련된 FTA국내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어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단위: 조원, '08~'17년 합계)

		'07년 대책 (A, '07.11월)	수정대책 (B, '11.8월)	추가대책 (C, '12.1월)	증감(C-B)
합계		49.9	51.1	54.0*	2.9*
재정		21.1	22.1	24.1	2.0
세제	일몰연장분				
	면세유	15.2	15.2	15.2	-
	영세율	13.6	13.6	13.6	-
	소계	28.8	28.8	28.8	-
	일몰연장 외	-	0.2	1.0	0.8
	소계	28.8	29.0	29.8	0.8

*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규모 0.1조원 포함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하락 등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농수산물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하락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2011년 7월 1일부터 재시행된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축수산업 분야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을 완화(80 → 85%)하고 보전비율(80 → 90%)을 높이는 한편, 시행기간을 연장(7년 → 10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12.1월 추가대책에서는 발동기준을 90%로 더 완화하여 FTA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발생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한 층 더 높였습니다.

- 피해보전 직불제 : 생산면적(마리)×(기준가격-해당년도가격)×90%
- * 기준가격 : 직년5개년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90%

폐업지원제도

FTA로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을 지원합니다.

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폐업할 경우 3년분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피해분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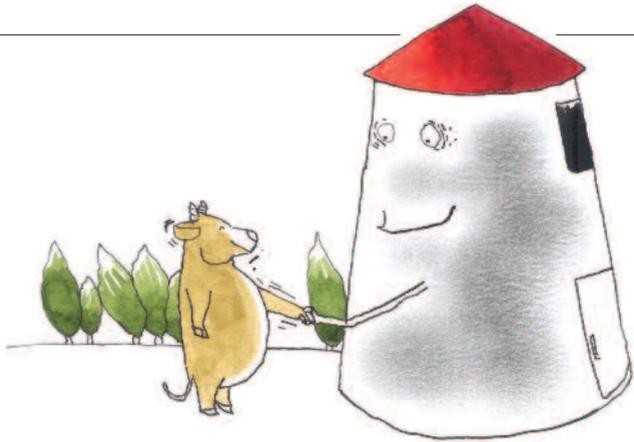
- 폐업지원금 : 폐업면적×연간순수익×3년

FTA 이행지원센터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이행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설치됩니다.

이행지원센터는 농수산물 품목별 국내외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수산물 수입피해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검토하며, 협정의 이행과 가격하락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피해보전직불 등 관련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상담·안내 업무를 하게 됩니다.

FTA 등 개방 환경에서도,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품질 생산체계구축

특히, 축사·과수·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수리·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 납니다.

'11.8월 FTA 종합대책 마련시 시설현대화 등 핵심 인프라 지원 규모를 당초 2.2원에서 4.0조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가축 질병예방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규모를 3.0조원(당초 1.5조원)으로 대폭 늘려,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의 100%인 1.2만호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조 없이 순수 용자방식만 지원 받을 경우에는 용자금리를 현행 3% 보다 낮은 1%로 인하하여 지원합니다.

아울러 비용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비가림시설 등 과수고품질 시설 지원(0.4 → 0.6조원)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노후화된 온실 등 원예생산시설의 현대화(시설 증·개축) 지원(0.3조원 → 0.5조원) 규모도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12.1월 추가 대책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줍니다.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브랜드 육성을 통해 발작물 및 과실·축산 우수 브랜드를 키워 수입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과수, 원예, 발작물, 축산)를 육성하여 고품질 생산 및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과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단일화하는 공동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발작물·원예브랜드 육성에 나가겠습니다.

- * 발작물 브랜드 지원 규모를 67개소로 확대(당초 40개소)
- * 원예작물 브랜드: ('08) 6개소 → ('15) 30개소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위생안전성제고를 위해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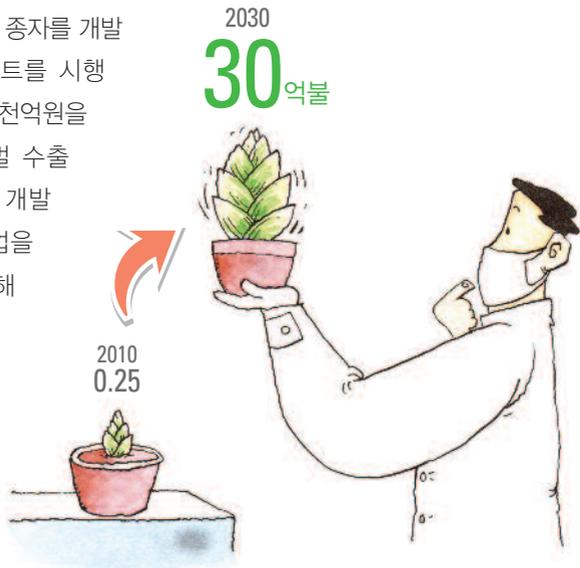
- * 한우 브랜드 비중(%): ('07) 32.6 → ('08) 39.3 → ('09) 42.4 → ('10) 49.5
- * 양돈 브랜드 비중(%): ('07) 57.0 → ('08) 59.5 → ('09) 62.0 → ('10) 65.0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규모화에 따른 경영안정 및 수급기능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미래성장을 위한 가족 품종개량 및 종묘·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생명공학 기술 개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수출 전략 종자를 개발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약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출 전략형 종자를 20개 이상 개발하여, 2030년에는 종자산업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체계 구축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자원순환형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및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 '08~'17년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77개소, 친환경농업지구 756개소 조성

특히, 유기·무농약 농업에 대한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50% 높이고,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 논: (유기) 392천원/ha → 600, (무농약) 307천원/ha → 400
- * 밭: (유기) 794천원/ha → 1,200, (무농약) 674천원/ha → 1,000

정부는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어장환경 개선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고, 친환경어구(통발, 자망)의 사용을 장려해 지속가능한 어업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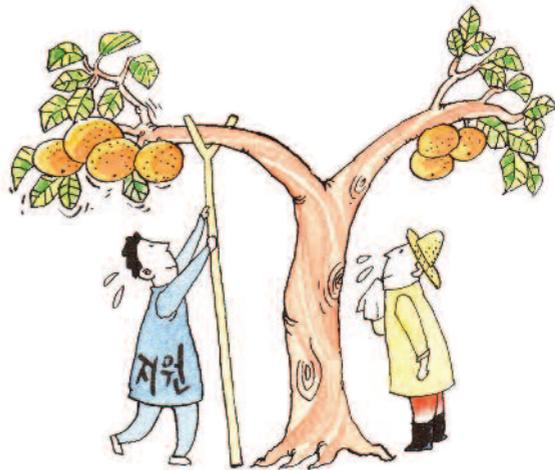
축산·감귤 등 피해산업 지원 확대

축산발전기금을 10년간('12~'21년) 2조원 늘려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귤류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12.1월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축산물 수급관리 강화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12.1월 대책을 마련하면서 과수분야 중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감귤관련 지원 예산을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려, 감귤 고품질시설 현대화 예산을 크게 늘려, 감귤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감귤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감귤관련 지원예산: ('11) 265억원 → ('12) 384억원(증 119)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체계 구축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직불제를 올해부터 신규 도입합니다.

논작물 뿐만 아니라, 밭농업 소득 및 어업 소득도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주요 식량작물의 지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직불제가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 대상품목 : 밀, 콩, 보리(겉쌀, 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일, 기타잡곡,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품목

수산직불제

어업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수산직불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우선 2012년부터 육지에서 50km 떨어진 어촌마을에 대해서 가구당 49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육지로부터 8km 떨어진 어촌마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직불금제도를 통합 개편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시행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제도시행에 앞서 농가소득 파악을 위해 '08년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행중이며, 1·2단계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년까지 제도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13년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을 10년간 유지하고, 공급대상을 확대하여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11.8월 대책 추가기종 : 농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 사료용)
- '12.1월 대책 추가기종 : 농업용 1톤트럭, 4톤미만의 스키드로더

영농기자재 세제지원

농어가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주요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란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수출재화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율을 0%의 세율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농어업인의 부업소득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을 포함하고 가족 공제두수 및 부업소득 금액을 늘렸습니다.

가족별 공제 두수



비과세 소득금액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 [양식어업] → 변경 [양식어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족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기본 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무관세 적용 품목도 16개로 늘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존(11개, 무관세) :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 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추가(11개, 무관세) :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아자박, 팜박, 면실피

* 주황색 품목은 무관세 적용 품목임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임차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임차농의 안정적·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임차농지 비율은 47.9%, 임차농가 비율은 62.2%로 지속적으로 임차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3년) 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 법제화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법제화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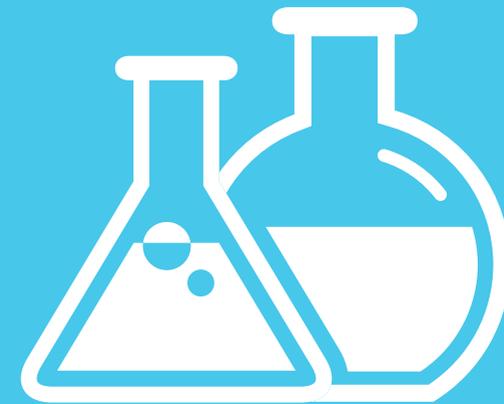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11.12.29)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현재 산업용이 적용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민의 생산비를 낮추었습니다.

* 농사용 전기료 추가 적용 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산지 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개방의 파고를 뛰어넘는 국내보완대책



제조업·서비스업·제약 분야

개방을 넘어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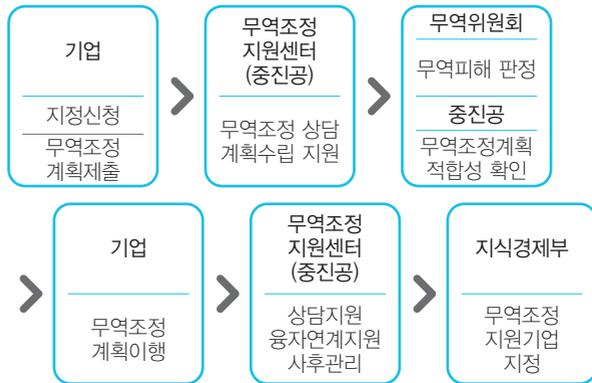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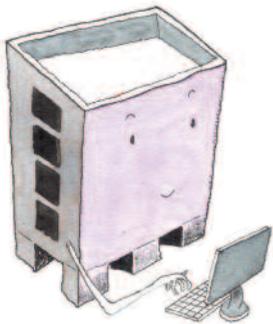
FTA로 인한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에게 융자, 경영·기술상담을 지원합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에게 융자, 경영·기술상담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무역피해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12.1월 FTA 보완대책에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조정제도 피해기준을 20%에서 5%~10%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무역조정지원센터(www.taa.go.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조정기업 지정절차



FTA피해 농어민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전국 47개소의 고용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여 FTA피해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현재 47개)내에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 각종 지원시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신속지원팀'을 한·미 FTA 발효시에 맞추어 설치합니다. 제조업 중 피해가 우려되는 제약산업 근로자의 고용지원을 위해 제약업 전담고용지원 센터를 지정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FTA피해 농어민·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

FTA로 인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과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전직을 지원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여 피해 농어민과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근로자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해 3단계에 걸친 취업성공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진단·경로설정 단계에서 참여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욕·능력증진 단계에서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집중 취업알선 단계에서는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됩니다.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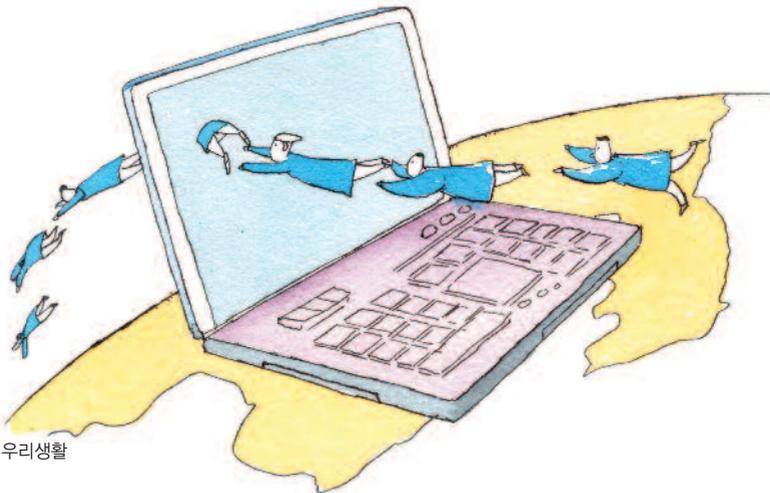


중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계정 설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FTA 등으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3,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신설(13.1.1 시행)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조성은 정부출연금(전년도 관세징수액의 3%기준), 기부금품,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복권 수익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계정용도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구조고도화,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합의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동반위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생법을 일부 개정하여 동반위가 민간 자율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되, 합의실패시 현행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도출에 실패하거나 기업들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반위에 사업조정 신청권을 부여하여 중기청장으로 하여금 현행 사업조정제도에 따라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제한을 권고, 공표, 이행명령,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 유통시설 규제 법제화

대형유통시설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1달에 1~2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약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R&D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10년간('08~'17) 약 1조원을 투자합니다.

제약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약개발 R&D를 지원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 확대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혁신 신약 개발을 지원하여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정부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신약개발 R&D에 약 8,100억원을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약 1,600억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의약품이 해외시장에서 제품화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및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혁신 신약 개발지원에 약 6,00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약 기술로 세계적인 수퍼제네릭을 제조·육성하는 사업에 약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 최첨단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업에 약 1,500억원을 지원하여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특허정보, 허가정보, 시장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특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업계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의약품 특허정보 수집에 소요되던 탐색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건산업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적시·적소에 필요한 통계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우리 보건의료기업의 글로벌성 향상 지원, 북미지역 품목 인허가 지원,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업무 및 수출업무를 지원하여 내수 위주의 제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내수 위주의 제약산업을 선진 해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정부는 2011년부터 북미 시장 진출 특화전략인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2개 기업을 선정하여 보건의료기업의 글로벌성 향상 지원, 북미지역 품목 인허가 지원, 현지 마케팅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성 향상지원

R&D 지원(해외임상), 지식재산권(특허) 관리, cGMP 교육 및 모의실사

품목 인허가 지원

미국 인허가 파트너 회사 및 규제당국과 협력체계 구축, 규제동향 정보제공, 인허가 업무대행 및 동행 서비스, 인허가 컨설팅 및 획득 비용지원, 인허가 교육, 신뢰 있는 컨설팅기관 및 CRO(임상시험 대행기관) 등 리스트 제공

현지 마케팅 지원

시장 및 수출입 정보제공, 미국보건의료기관 등 네트워크 확대, 홍보,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국내 제약업체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국 현지에서 인허가 업무 및 수출 업무를 지원하고, 현지 정보를 수집·제공해 주는 의약품 전략 마케팅 정보의 전진기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HT(Health Technology) 산업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품 수출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지원센터는 현재 뉴욕, 싱가포르, 북경 3개소에 위치해 있으며, 현지 바이어와 한국기업의 공동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는 등 수출기업의 공동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센터 주요기능

주요기능	내용
전문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특허 지원, 수출입 정보 및 시장정보 수집, 해외기술 수출입 지원, 국제기구 활동지원, FTA 협상 및 후속조치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바이어 섭외 및 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수출 파트너링 행사 개최
수출기업 공동대표 역할	현지진출 한국기업협의체 구성, 외국정부에 대한 한국기업체 공동대표 역할, 현지바이어와 한국기업의 공동 접점으로서의 역할

또한 정부는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에게 제약·의료기기 수출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수출국가별 주요 동향 수출입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의약품 수출입 정보은행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의약품 전(全)주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해외 시장동향, 수출입정보, 규제정보,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인 GMP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사전상담을 제공하여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인 GMP는 제약업체가 원료 입고에서 의약품 출고,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품질관리 기준으로서 시설 내용과 위생관리 현황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한·미 FTA를 계기로 정부는 GMP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GMP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에게 GMP와 관련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산업의 제도선진화를 위한 실무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GMP 교육을 위해 10여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약 2천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의약품 사업화에 최첨단 분야 융합지식을 가진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임상시험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5개의 지역임상시험센터를 통해 선진 임상시험서비스를 지원하고, 임상시험분야의 특화된 틈새시장을 집중 발굴·지원하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및 심사와 관련하여 국제공통 서식을 시행합니다.

의약품의 국내 허가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양식을 국제공통서식으로 통일하고,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안정성이 제고되도록 제약산업 시설을 현대화합니다.

정부는 의약품의 국내 허가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양식을 국제공통서식(CTD)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의약품 허가 규정과의 부조화에서 오는 의약품의 해외진출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고, 허가규정, 안전성, 유효성 심사와 기준, 시험방법 등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2009년 3월 신약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약품 유통에 있어서 안전성이 제고되도록 제약산업 시설을 현대화해 나갑니다. 도매상 창고면적의 최소기준(50평), 제약 보관 냉장온도 기록이 자동으로 체크되는 시설의 구비, 지정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의 입출고 시 확인·기록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의 최소기준 설정 및 유통 중 의약품의 안전관리 제고 등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을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인 쇄 2012년 3월
발행(개정판) 2012년 3월

발 행 처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교육홍보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전 화 02-2150-5732
팩 스 02-3418-1089

편집디자인 비컴(02-543-6133)